

濟州島研究 제14집(1997), pp. 271~307

19세기 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 1897년 덕수리 호적증초를 중심으로

이 창 기¹⁾

요 약

이 연구는 1897년에 작성된 덕수리의 호적증초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자료로 사용한 호적증초의 기재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연구내용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제주도 가족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제주도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제주도의 여성들은 대체로 20세를 전후한 시기에 혼인하고 있으며, 18세에서 22세 사이에 과반수의 여성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적증초가 3년마다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7세에서 21세 사이에서 많은 여성들이 혼인하여 여성들에 한해서는 조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의 연령차를 살펴보면 처연상형이 적어도 $\frac{1}{3}$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 사대부가에서 처연상형이 많고 평민들은 남편연상형이 많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명문 동족집단이나 양반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제주도의 농촌마을에서 처연상형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제주도 특유의 혼인양상으로 이해된다.

19세기 말에도 제주도에는 축첩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정치에 비해서

1)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 틀림이 없지만 혼인제도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혼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촌락내혼도 분석 대상자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혹은 3대 이상 촌락내혼을 계속하거나 여러 자녀를 마을 안에서 혼인시키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도 촌락내혼은 자연스러운 혼인양식으로 이 마을에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촌락내혼 뿐만 아니라 양가 당내집단이 혼인관계를 중첩시키는 겹사돈혼인도 드물지 않게 행하여 혼인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사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호적증초가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직접적인 연구결과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특히 호적증초에 기록되어 있는 남성의 연령기록이 광범위하게 의도적으로 정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방면의 연구에 깊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서 론

제주도의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여러가지 면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의 현대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 가족제도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위하여 19세기 말 제주도의 가족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가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9세기 말에도 제주도에는 오늘날 제주도 가족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즉 규모면에서 소규

모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가족구성이 매우 단순했으며, 장남분가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창기 1995).

제주도 가족은 가족의 구성형태뿐만 아니라 혼인제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상이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혼인에 이르는 의례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촌락내혼과 이혼·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축첩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의 혼인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것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영인한 덕수리(德修里)의 호적중초(戶籍中草)²⁾를 이용하여 19세기말 제주도 농촌의 한 마을에서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적중초가 갖는 자료의 특성 때문에 혼인의례까지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초혼연령과 부부의 연령차, 축첩, 촌락내혼, 겹사돈 혼인 - 두 집안간의 중복된 혼인관계 -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제주도 혼인양상의 일면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동성동본 혼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1897년의 호적중초에는 단 하나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도서관 향토자료실에서 발굴한 1810년의 중문리 호적중초에도 동성동본의 혼인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19세기에는 제주도에도 이미 동성동본 불혼율이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³⁾

2) 덕수리의 호적중초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김동전 교수가 조사 발굴하였으며, 고창석 교수의 해제를 덧붙여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전 4권으로 영인 출간하였다. 현실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한 자료를 발굴해서 빛을 보게 한 김동전 교수와 자세한 해설을 통해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준 고창석 교수, 그리고 영인출간의 부담을 담당해 준 탐라문화연구소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조언을 제공해 준 두 분의 익명의 논평자에게도 감사드린다.

II. 자료의 성격과 한계

1. 덕수리 호적중초의 작성양식

본 연구에 사용된 주된 자료는 남제주군 안덕면에 위치한 덕수리(德修里)의 1897년(建陽2年) 호적중초이다.

덕수리는 남제주군 안덕면의 가장 서쪽 마을로서 산방산 북쪽 일주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사계리, 동광리, 서광리와 합쳐 자단리(自丹里)라 불리다가 이들 마을들이 점차 분리(分里)해 나가서 1831년께는 ‘新堂里(새당)’로 명명되었고⁴⁾, 1840년에 덕수리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주대 국어국문·국어교육과 1982: 16, 제주도지 제1권 1993: 196, 고창석 1993).

이 마을은 덕수골, 큰가름, 도련동의 세 취락이 합쳐서 하나의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는데 1981년 7월에 332가구, 인구 1,355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은 전작농업을 주로 하면서 과수와 축산도 겸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덕수리는 도내에서 ‘불미마을(풀무마을)’로 널리 알려져 이곳에서 만든 솔, 보습, 쟁기, 팽이, 쇠스랑 등의 제품들이 제주도 전역으로 팔려 나갔다고 한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풀무질에 종사하여 덕수리 주민들은 인내력과 투지가 강하고 아울러 협동과 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1979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

3) 泉靖一은 그의 저서 <濟州島>에서 1965년 K리와 T리의 동성동본 혼인율이 각각 6.5%와 8.8%라고 소개하고 있으나(泉靖一 1966: 296)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4) 사계리, 동광리, 서광리가 자단리에서 分里된 시기를 新堂里로 동명이 바뀐 1931년께로 보기도 하지만 동명이 변경된 전후의 호수와 인구수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분리의 시기는 1800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을 받은 '불미노래'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풀무질의 자취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제주대 국어국문·국어교육과 1982: 19 122-123).

덕수리의 호적중초는 1804년부터 1897년까지는 매 3년마다, 그리고 1898년부터 1908년까지는 매년 작성되었다. 1922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 1세기에 걸친 자료가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어서 한 마을의 인구 및 가족의 구조와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제주도 호적중초의 자료적 가치와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이창기 1995) 이 자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897년의 덕수리 호적중초는 그 이전의 호적중초와 비교할 때 작성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미 자세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1894년까지의 호적중초는 여러 가호를 합호하여 한 호로 편제하는 방식을 취한데 비해 1897년 이후에는 실제의 생활단위 즉 자연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여러 가호를 합호하는 1897년 이전의 편호방식은 실제의 가구규모나 가구구성 형태의 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자연호를 기준으로 작성한 1897년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시의 구성형태는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 자료와 비교하여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혼인관계를 밝히는 데는 이와같은 편호방식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1897년 호적중초부터 호주처의 四祖(父·祖·曾祖·外祖)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호구자료에서는 호주 및 호주처의 四祖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1894년까지의 덕수리 호적중초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매우 충실했었다. 호주처 이외의 기혼여성들(호주의 모, 자부, 손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父의 직역과 성명을 밝혀(생략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의 출신계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1897년부터는 호주의 四祖만 밝히고 있을 뿐 호주의 모와 자

부 손부 등은 물론이고 호주의 처에 대해서 조차도 연령 이외의 일체의 기록을 생략하고 있다. 이 점이 혼인관계를 분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일일이 과거의 기록과 대조하여 혼입여성의 배경(四祖의 성명과 직역)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규 등재자나 새로이 혼입한 경우에는 출신배경의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2. 기록내용의 부정확

여러 식년의 호적증초를 상호 비교해 보면 부정확한 기재내용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는 연령표기의 부정확을 들 수 있다. 1897년 호적증초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연령기록을 과거로 소급해서 추적해 보면 매 식년 사이이 연령환산이 잘못된 부분을 무수히 만나게 된다. 이러한 연령기록의 부정확은 부녀자의 연령기록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남성의 연령표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초혼연령이나 부부연령차를 분석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19세기 말에도 덕수리에는 적지 않은 인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호적증초에 등재되어 있었던 개인이나 가호가 후대의 호적증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과거의 호적증초에는 보이지 않던 개인이나 가호가 후대의 호적증초에 새로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중에는 단순한 기록누락이나 누락된 기록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우도 다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수는 실제로 전출 혹은 전입한 경우일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가족단위의 집단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전출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⁵⁾. 실제의 전출입에 의한 것이든

5) 호적작성시에 전출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기재누락

기재착오에 의한 것인 간에 개인이나 가족집단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전후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자료의 추적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름을 바꾸거나(改名) 동음이자(同音異字)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추적과정에서 동일인을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의 지위표시나 부녀자의 호칭표시에 있어서도 '妻'이 妻로 바뀌거나 '召史'가 '氏'로 바뀐 예와 같이 변화가 많아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덕수리의 호적중초가 이와같이 자료로서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하고, 또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준다면 당시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신분에 따라서 혼인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적중초의 자료만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남성들의 직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호주 4호를 제외한 165호의 남자 호주의 직역을 살펴보면 擧議가 87명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고, 別監 23명, 幼學 9명, 座首 6명, 通政 5명 등 양반 혹은 준양반으로 분류해야 할 직역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직역 22종 가운데 위의 5종을 제외한 나머지 17종의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창기 1995). 대정고을측의 양반 텃세와 전래의 풀무질에 대한 속신의 영향으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대정고을 마을들과의 통혼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될 만큼(제주대 국어국문·국어교육과 1982: 20) 양반문화의 기반이 취약한 이 마을에서 거의 8할에 가까운 호주가 양반적인 직역

이나 기재착오가 적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출입의 기재원칙도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것은 직역을 기준으로 신분을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처의 호칭(氏 處은 召史)을 기준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편의 직역에 상응하여 기계적으로 처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어서 이 또한 남편의 직역과 마찬가지로 신분구분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주저된다. 이러한 직역 자료를 바탕으로 신분을 구분하여 가족구성을 분석해 본 기존의 연구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이창기 1995).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신분별 분석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III. 초혼연령과 부부의 연령차

1. 연령기록의 혼란상

초혼연령과 부부의 연령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연령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덕수리의 호적중초에는 연령기록이 매우 부정확하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연령기록에서 부정확한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매 식년의 연령기록을 대조해 보면 부녀자의 연령기록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데 비해 남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기재한 예가 드물다고 할 정도로 연령기록의 혼란이 심하다. 이러한 남성들의 연령기록의 혼란은 대개 연령을 높이는 상향조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1~2년 혹은 2~3년 정도를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갑자기 10년씩 높이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인에게 이러한 연령의 상향조정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연령조작은 매우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사례의 연령기록을 편의상 9년 간격으로 소개 한다(<표 1>).

<표 1> 부정확한 연령기록의 사례

	박☆원 (No.027)	김☆규 (No.032)	윤☆찬 (No.063)	고☆용 (No.074)	송☆윤 (No.118)	강☆주 (No.119)	오☆문 (No.146)	송☆국 (No.150)	송☆지 (No.154)
1843	.	.	4	.	5	15	6	17	6
1852	43	5	13	9	14	*30	15	26	15
1861	*49	14	*30	16	*33	39	*35	*45	*33
1870	*55	*33	42	27	42	*58	44	54	42
1879	64	42	51	36	51	67	*63	67	51
1888	73	51	60	*55	60	*66	72	76	60
1897	82	60	69	64	68	75	81	85	69

(*)는 연령기록이 특히 부정확한 부분이다.
성명 밑의 (No.)는 필자의 자료 파일의 번호임.

이러한 연령기록의 혼란은 단순 실수에 의한 기재착오라기 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들의 연령기록이 매우 정확한데 비해 유독 남성들의 연령기록에서만 기재착오가 광범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에 갑자기 10년씩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의도적인 조작을 의심케 하는 요소이다.

남성들의 연령기록 부실이 의도적인 조작의 가능성성이 크다고 본다면 우리는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출생 후 상당 기간 동안 호적증초에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등재하면서 마치 새로 출생한 자녀처럼 나이를 현저하게 낮추어 등재하고, 자녀가 장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실제 나이에 가깝게 정정하면서 연령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대나 20대에서 갑자기 연령을 10년씩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결혼을 전후하여 이러한 연령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추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정정 이후의 나이가 실제에 가까운 나이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등재지연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령을 높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느 시기에 연령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높게 기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연령을 높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밝히기가 어렵지만⁶⁾ 30~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연령의 대폭 상향조정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경우에는 정정하기 전의 연령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염두에 두고 1897년의 호적중초에 배우자가 있는 남성들의 연령기록을 이전의 호적중초를 통해서 일일이 추적하여 초혼연령과 부부 연령차를 추정해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오차는 여전히 남아있으리라 짐작되지만 호적중초에 수록되어 있는 연령기록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비해서는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한 사회의 혼인관행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출산율과 관련되는 인구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조혼관습의 존재여부, 부부관계, 부녀자의 지위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출생율을 분석하기 위한 인구학적 연구에서는 여성의 초혼연령을

6) 군역이나 공납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연장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의식의 반영, 처연상형(妻年上型)에 대한 사회적 기괴의식의 반영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된 호적 중초의 자료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다. 향후 별도의 연구과제로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보다 중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양쪽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분석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남성의 연령기록이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적 연령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897년 호적중초에 유배우자로 기록되어 있는 남성들의 과거기록을 추적하여 그들의 첫 부인이 호적중초에 처음 등재된 당시의 부인의 나이를 확인하였다. 호적중초가 매년 작성된 것이 아니고 매 3년마다 작성되었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에 혼인한 내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실제 혼인한 것은 호적중초에 기록되기 평균 1년 내지 1.5년 전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추적의 대상이 된 남성들의 배우자 중에는 청이나 재혼부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초혼연령의 분석에는 확인된 초혼부인들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초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혼상태까지 추적을 계속해야 하므로 중도에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추적하여 확인된 113명의 부인의 초혼연령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여성의 초혼연령 분포는 15세에서 20대 말까지 - 실제로 있어서는 14세에서 28세까지가 되겠지만 - 걸쳐 있어서 그 폭이 비교적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전통사회에서는 조혼의 관행이 깊이 뿌리박혀 20세 이전에 모두 혼인하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적어도 이 자료에서는(자료가 매 3년마다 작성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0세 이후에 혼인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혼인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들이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도 혼인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데 비해 여성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14-15세를 넘어야 혼인하는 것은 혼인조건으로서 노동능력과 함께 출산능력을 매우 중시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14-15세는 생리적 출산능력의 하한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 여성의 초혼연령

초혼연령 현재나이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9	30 이 상	계
10대		1	2	2	2									7
20대			1	4	2	7	5	7	2		3			31
30대	3	2	1	1		3	3	2	1	5		5		26
40대	1			1	2	9	4	2	2	1	2	2	1	27
50대		2	2	2				3	1	1		1	1	13
60대	1				1		2			1	2			7
70대이상									1			1	2	
	5	5	6	10	7	19	14	14	7	8	7	8	3	113
계	16(14.2)						64(56.6)						33(29.2)	
	52(46.0)						61(54.0)						(100.0)	

평균초혼연령=21.3(추정평균초혼연령=20.0)

*현재나이는 호적증초에 기록되어 있는 부인의 1897년 현재 나이임.

*초혼연령은 호적증초에 처음 처로 등재된 당시의 나이임. 호적증초가 3년마다 작성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초혼연령은 이보다 1세 -1.5세 낮은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여성의 초혼연령의 분포가 비교적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혼인시기는 20세 전후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20세에서 최빈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연령층 즉 18세-22세(조사간격을 고려한다면 17-21세)에 전체 초혼의 약 57%가 몰려있는 것이다. 20대 중반 이후에 혼인한 사례들 속에는 호적증초의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초혼 이외의 사례가 다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다수의 여성이 18세-22세(17-21세)에 혼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 마을의 혼인양상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848년부터 1912년까지의 대포리 자료를 분석한 김혜숙도 여성의 초혼연령이 16세-22세에 66%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자료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혜숙 1993: 200 <표 11>).

3. 부부의 연령차

부부의 연령차는 남녀 양쪽의 연령기록이 정확할 경우에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 쪽의 연령기록이라도 부실하게 작성된다면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앞서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덕수리의 호적중초는 남성의 연령기록이 매우 부정확하다. 매 식년의 연령환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수정과 조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적중초의 기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부부의 연령차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료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배우 남성들의 과거 기록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연령의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들을 전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남성들에게서 1회 이상 연령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적개는 수년에서 많게는 20~30년 이상의 연령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들의 연령수정은 10대 혹은 20대 특히 결혼을 전후한 시기에 연령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경우와 30대 이후의 중·장년기에 연령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10대나 20대 특히 결혼을 전후한 시기에 연령을 수정한 경우는 지연등재에 따른 기재오류의 정정일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비해 중·장년기에 연령을 정정한 경우는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령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 조작의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필자는 10대나 20대에 연령을 수정하였거나 결혼 전후(대체로 결혼 전후 10년 이내)에 연령을 정정한 남성의 연령은 정정된 연령을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부부연령차를 산출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30대나 40대 이후에 연령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 당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자로서도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에

는 일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오차를 다소라도 줄이기로 하였다.

청소년기나 결혼을 전후한 시기에 연령을 수정한 대표적인 몇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부정확한 연령기록과 초혼연령추정의 사례

		매 식년의 연령기록							추정초혼연령
홍☆표(No.001)	남편	3	6	19	22	25	28	31	16
	처	16	19	22	25	28	31		16
김☆홍(No.006)	남편	3	6	9	12	25	38	41	19
	처			20	23	26	29	32	20
윤☆찬(No.025)	남편	8	11	14	17	30	33	36	21
	처		21	24	27	30	33	36	21
김☆덕(No.049)	남편	3	6	9	12	25	28	31	19
	처			20	23	26	29	32	20
송☆우(No.111)	남편	9	12	15	18	31	34	37	25
	처		21	24	27	30	33		21
박☆直(No.112)	남편	6	9	12	15	28	31	34	25
	처			22	25	28	31		22
이☆관(No.158)	남편	3	6	9	12	…	24	37	16
	처		19	22	25	…	37	40	19

*연령기록의 진한 숫자는 연령정정이 이루어진 혼적이다.

*초혼연령은 호적증초에 처가 처음 등재되었을 때의 연령이므로
실제로는 여기에서 1.0-1.5세 낮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수정 보완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10대나 20대에 수정한 연령이 과연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별과정에 필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음

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무릅쓰고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은 호적증초의 기록연령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한다면 오차의 범위를 훨씬 축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부결합에서 남편연상형과 처연상형의 비중이 어떠하며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만이라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97년 당시의 유배우 남성들의 부부연령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부인의 초혼연령 추적이 가능했던 113명 중에서 남편의 연령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7명을 제외하고 96쌍의 부부가 부부연령차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4>에 의하면 동갑이 12.5%, 처연상형이 47.9%, 남편연상형이 39.6%로서 처연상형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처연상형의 비율은 우리의 상식적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자료에는 남편의 초혼연령

<표 4> 부부의 연령차

처의 연령	처연상							동갑	남편연상							계
	7'	6	5	4	3	2	1		1	2	3	4	5	6	7'	
10대				1		1		1			1			1		5
20대	1	1	2	2			2	5			3	2	4	1	1	24
30대	3	1	2	3	1	3	2	1		1	1		1	1	2	22
40대	3	1		1	3	1	3	3		3	1	2		3		24
50대			2	1			1	1	1	3	3					12
60대	1		1		2					1	1			1		7
70이상		1						1								2
계	8	4	7	8	6	5	8	12	1	8	10	4	5	7	3	96
	46(47.9)							(12.5)	38(39.6)							(100.0)

부부연령차의 평균 : 0.5년 처연상

이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48.4%라는 수치가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등재지연으로 인해서 남편의 나이를 현저하게 낮게 기록하고도 미처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남편의 나이가 많으면서도 우리의 분석에서는 처연상형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처의 연령이 남편보다 특히 많은 경우에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1897년 호적중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의 연령을 그대로 분석할 경우에도 당시의 유배우자 189명 중에서 처연상형이 25.4%(동갑 9.0%, 남편연상 65.6%)로 나타나고 있다. 두 자료가 모두 상당한 오차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당시의 처연상형 부부의 비율은 적어도 35%는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1900년 이후 청수리와 고내리의 부부연령차를 분석한 김혜숙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처연상형이 많이 보이고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도에 이르러서는 사라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혜숙 1993: 157-158 및 201의 <표 14>).

일반적으로 부부의 연령차는 신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서 신분이 높을수록 처연상형이 많고 신분이 낮을수록 남편연상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적자료를 이용하여 조선후기의 가족을 분석한 최재석의 연구에 의하면 신분적 위세가 강한 양동의 지배적 양반에 있어서는 처연상형의 비율이 56.2%에 달하고 있지만, 위세가 강한 동족부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전남 곡성현의 농촌지역에서는 각성양반이 27.7%, 상민의 경우에는 9.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최재석 1983: 420 443). 위세있는 동족부락도 아니고 양반문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조사대상 마을에서 처연상형이 이처럼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신분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주도가 갖는 혼인양상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 제주도에서 처연상형 부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가정으로서 여성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제주도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제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육지의 전통 사

회에서는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남자는 쉽게 배우자를 맞아 들이기가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 만혼하는 경우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아내를 맞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양반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맞아 들이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혼인하는 조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럴 경우에 처연상형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밭농사와 나참어업 등 여성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아내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육지 농촌에서처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력을 갖춘 아내를 맞아들임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남성이라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 때문에 혼인을 자연시킬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혼인 적령기를 넘기지 않은 시기에(때로는 매우 어린 나이에) 노동능력과 출산능력을 갖춘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연상의 아내를 맞이할 가능성 또한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부부 연령차의 폭도 대체로 7년을 넘지 않는 범위인 것으로 보인다. 처연상형에 7년 이상의 폭을 가진 사례가 8건이나 기록되어 있으나 이 중 7년 연상이 5사례이고 3건이 9년 연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속에 자연등재에 따른 연령오기를 정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더러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처가 7년 이상이나 연상인 사례는 실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후기의 가족구조를 분석한 최재석의 연구에서도 처연상형의 부부의 연령차가 7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최재석 1983: 443)⑦).

7) 최재석의 보고에 남편이 10년 이상 연상인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초혼자와 재혼자를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다수의 재혼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IV. 축첩

1. 첨의 존재양태

김상현이 쓴 남사록(南槎錄: 1601))에 보면 “(제주)사람들은 땀 낳기를 중히 여기며 여성의 수가 남성의 세곱이나 되어 비록 뺄어먹는 자라도 처첩을 거느린다.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비록 몸에 병이 있는 남성이라도 계집얻기를 많으면 8-9인에까지 이른다”(제주도교육위원회 1976)라는 기록이 나온다. 김상현의 이 기록은 크게 과장된 것이겠지만 이 시기에도 제주도에 첨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김혜숙은 19세기 하원리(河源里)의 호적증초를 분석하여 첨의 실태와 첨의 연령, 남편과 첨의 연령차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필자의 자료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세기의 하원리에도 많은 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김혜숙 1993: 121-129).

제주도에 첨이 많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에까지 지속되어서 1970년대 이후의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들 까지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다(최재석 1979: 189-218, 김혜숙 1993: 130-147).

필자가 분석하는 19세기의 덕수리 호적증초에도 첨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1897년 현재 배우자가 있는 189명의 남자 중에서 현재 첨을 두고 있거나 과거에 첨을 두었던 경험이 있는 자를 합하면 29명(15.3%)이나 된다. 이외에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남성들 중에도 과거에 첨을 두었던 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 필자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 중에도 과거에 첨의 신분이었던 자들도 적지 않다. 또한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음성적인 사례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당시 덕수리에 첨이 이보다 더욱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덕수리의 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

태로서는 정처(正妻)가 존재하면서 첨이 있는 경우이다(12사례). 그러나 처는 보이지 않는데 배우자를 첨으로 명기한 경우(14사례)도 많다. 현재는 첨이 없으나 과거 어느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 첨을 두었던 경험이 있는 자(3사례)도 있다.

2. 妻가 있는 경우의 妻

일부일처제 하에서는 처첩간의 신분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정처가 있을 때 첨의 존재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항상 정처의 지위와 관련된 상대적인 지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처가 존재하는 경우의 첨이 축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897년 덕수리의 호적중초에는 이러한 형태의 축첩이 12사례가 있다.

그런데 처와 첨이 공존하는 경우에 그들의 거주양식이 어떤가 하는 문제는 처첩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처첩이 동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처첩이 따로 거주하고 있는가? 별거하고 있다면 남편은 정처와 동거하는가 첨과 동거하는가? 덕수리의 호적중초에는 이러한 세가지 거주양식이 모두 다 존재하고 있다. 12사례 중 처첩이 동일 가구 내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6사례, 남편은 첨과 동거하고 정처는 사부모나 아들부부와 동거하는 형태가 4사례, 남편은 정처와 동거하고 첨이 아들 부부와 동거하는 형태가 2사례로 나타난다.

3. 妻가 없고 妻만 있는 경우

정처가 보이지 않는 데도 호적중초에 첨으로 명기된 사례가 덕수리 호적중초에 14사례나 발견되어서 첨의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첨을 정처에 대한 상대적인 지위로 이해한다면 정처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처로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를 첨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한 두 사례도 아니고 14사례나 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 오기는 아닌 듯하다. 정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부상에 첨으로 명기하였다면 이러한 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첨이 된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14사례 중 단 한 사례만이 과거 정치가 있을 때 첨으로 들어와서 정치가 호적증초에서 누락된 이후에도 계속 첨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13사례는 남편의 첫 배우자인데도 첨으로 등재(4사례)되었거나, 정치와의 혼인관계가 해지된 이후 - 사별인지 이혼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 남편이 무배우 상태일 때 첨으로 등재된 사실상의 재혼 상대자이다(9사례).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정치의 존재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의 출신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거의 모든 첨들에 대해서는 혈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예컨대 4祖의 기록)를 기록해 두지 않아서 명확하게 출신신분을 따져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강하게 잔존해 있는 신분제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처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마을) 내에서는 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실상의 재혼 상태에 있는 첨의 일부(3사례)는 1894년 혹은 1897년에 妻에서 妻로 또는 子妻에서 婦로 기재내용이 바뀌기도 하였다. 첨의 지위가 출신신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상당한 동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⁸⁾.

8) 정치가 없고 첨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의 호주(남편)가 실재로는 다른 가구 또는 다른 마을에서 정치와 동거하면서 혼자 사는 첨의 집에 단지 호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4사례의 호주들의 기록을 취첩하기 이전까지 소급하여 추적해 본 결과 이들은 모두가 이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람들이며, 이들의 정치로 추정될 만한 대상자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 가능성은 매우 회박한 것으로 보인다. 독신 여호주가 4명 있으나 정치를 독신 여호주로 남겨두고 첨의 호적에 호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과거에 첨이 있었던 사례

현재는 첨이 없고 정처만 있지만 과거 어느 시기에 첨이 존재했던 경우도 3사례가 있다. 처첩이 공존하다가 첨이 사라지고 처만 남은 경우(1사례)도 있고, 정처가 기록에서 누락되고 첨만 남아 있다가 다시 첨이 사라지고 또 다른 처가 등장하는 경우(2사례)도 있다. 이들 3사례는 모두 상당 기간 동안 처첩이 공존했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축첩의 형태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5. 첨의 사회적 지위

이상에서 우리는 1897년 덕수리의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의 첨의 존재양태를 살펴 보았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호적중초의 기재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97년과 그 이전의 호적중초에서 가구원들을 기재하는 순서를 보면 호주, 호주의 처, 처의 자녀를 모두 기재하고 그 뒤에 첨을 기재하여 적자녀보다 아래 순서에 두고 있다. 첨의 자녀가 있을 때는 첨의 다음에 그 자녀를 기재하여 적자녀와 첨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와 첨의 공부상 호칭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흔히 양반의 경우에는 부녀자의 호칭으로 '씨(氏)'를 사용하고 신분이 낮을 경우에는 신분에 맞춰 소사(召史), 조시(助是), 녀(女), 성(姓), 예(乂), 덕(德) 등을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97년 덕수리의 호적중초에서는 덕(德)을 칭한 단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씨(氏)와 소사(召史)만이 부녀자의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처의 호칭으로는 남편의 직역에 상응하여 氏와 召史가 두루 쓰이고 있으나 첨에게는 반드시 召史만이 사용되고 있다. 召史로 칭할 수 있는 여성만이 첨

이 된 것인지 氏를 칭할 수 있는 사람도 첨이 되면 소사로 칭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공부상의 호칭에서도 첨은 처보다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한 것이다.

호적의 기재양식과 호칭에서 나타나는 처첩간의 차별은 19세기의 하원리 호적중초를 분석한 김혜숙의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숙 1993: 123-125).

그러나 호적의 기재양식이나 공부상의 호칭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첨이 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첨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첨이 되었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 이런 경우는 호적중초에 등재되기도 어려웠겠지만 - 일단 첨이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의 생활과정에 있어서는 그들의 지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편의 나이(호적중초의 기록 나이)가 10대나 20대이어서 향후 이들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3사례)도 있고, 과거에 첨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가 최근 기록에서 사라진 사례(3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23사례는 일단 첨이 되고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남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들을 얻기 위해 본처의 허락 또는 둑인 하에 축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처의 심리적 저항이나 처첩간의 갈등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되지만⁹⁾ 이처럼 많은 첨들이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첨제가 가족과 친족은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혼인제도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처가 생존해 있는 사례의 절반이 동일한 가구에서 처첩이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1970년

9) 金惠淑은 사례조사와 부녀자 면접을 통해서 축첩 남편에 대한 본처의 행동 양식을 ①남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녀들과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방식 ②법적인 이혼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본처가 집을 나가버리는 완강한 태도 ③첩을 떨쳐 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金惠淑 1993: 137-138).

대 이후 제주도의 축첩에 관해서 보고한 여러 학자들의 논저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비교적 약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첨을 次妻(佐藤信行 1973) 또는 재혼의 일종(최재석 1979: 216-217)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제주도에서 첨이 많이 존재하고 또 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비교적 약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론을 약하고자 하거니와 핵가족적 전통, 형식화된 유교적 규범의식의 약화, 여성의 경제력,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성비의 불균형(여다현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V. 村落內婚

제주도에서 촌락 내혼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김영돈 1973, 최재석 1977, 津波高志 1992, 김혜숙 1993). 이들의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촌락내혼의 비율은 마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 만 대체로 30%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촌락내혼은 육지의 농촌지방에도 존재하지만 도서지방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립성이 강하지도 않은 제주도의 마을에서 촌락내혼의 비율이 30%를 상회한다는 것은 고립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주도 특유의 혼인양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제주도 혼인양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촌락내혼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말에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아니고 호적증초와 같은 문헌을 통해서 촌락내혼을 확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혼입된 여성의 전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1897년의 호적중초에는 기혼여성의 부모조차도 거의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입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1897년 호적중초에 유배우자로 기록되어 있는 남성 189명의 자료를 호주처의 四祖와 호주처 이외의 기혼여성들의 父名를 기록하고 있는 과거의 호적중초와 대조하여 처의 가계를 일일이 추적하였다. 그 결과 189명 중 117명의 처의 친정 父祖名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불가능한 자가 70여명이나 되는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혼입되었거나 신규전입하여 과거의 호적중초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등재되어 있더라도 父名이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명단을 미리 작성해 둔 인명색인(현존 주민과 그들의 四祖 및 호주처의 四祖)을 대조하여 혼입여성들의 친족관계를 추적해 나갔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혼입여성들의 직계친 - 친정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 이나 친정의 가까운 남계혈족 - 남자형제, 사촌형제, 친정조카 등 - 들이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촌락내혼으로 간주하였다 것이다.

첩도 촌락내혼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처가 생존해 있는 첩은 제외하고 정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호적중초에 첩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과거에 첩이었던 자라도 현재 처가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재혼의 경우에는 현재의 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확인된 촌락내혼자는 추적 대상자 117명 중 47명으로 나타났다. 촌락내혼의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현대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러 자료에서 밝혀진 30% 이상의 촌락내혼율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기혼남성을 다 분석하지 못하고 추적 가능한 117명의 유배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소 자료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117명 중 40%에 해당하는 47명이 촌락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였다는 것은 19세기 말에도 이 마을에서는 촌락내혼을 보편적인 혼인양식의 하나로 수용하

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필자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촌락내혼자는 상당수가 더 존재한다. 무배우 기혼남성(홀아비)이나 무배우 기혼여성(과부) 중에도 과거 기록의 추적과정에서 촌락내혼자로 확인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재혼자 중에도 전처가 촌락내혼자인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기록의 미비로 추적이 불가능했던 자 중에도 촌락내혼자가 적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 촌락내혼자의 수는 47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촌락내혼을 한 사례들 중에는 2대 혹은 3대를 계속 촌락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을 촌락 내에서 혼인시키는 경우도 있다. 부자 또는 모녀 양대가 촌락내혼을 한 예는 여러 건이 있으며 부계든 모계든 3대가 내리 촌락내혼을 한 예도 2건이나 발견된다. 또 1남2녀를 촌락내혼시킨 예, 두 딸을 마을 안에서 혼인시킨 예, 자신과 세 딸이 모두 촌락내혼을 한 집안도 보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촌락내에서 혼인을 함으로써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마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친족그물망을 구축하고 있다. 혼인을 매개로 한 이 망상구조는 너무 복잡하여 이 자리에 도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른 촌락과 혼인한 사례를 추적하여 촌락내혼 뿐만 아니라 덕수리 주민들의 지역적 통혼권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나 호적중초의 자료만으로는 혼출여성은 물론이고 혼입여성의 출신지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능하였음을 밝혀둔다.

VI. 겹사돈혼인

1. 연줄혼인 · 겹사돈혼인 · 부찌시돈혼인

이성접촉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혼인을 가문 대 가문의 결합으로 의식하는 사회에서는 매파의 중개에 의한 중매혼의 비중이 커진다. 중매는 전문적인 매파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혼인을 통해서 타 가문과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들이 직간접으로 중매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혼인을 흔히 '연줄혼인' 또는 '연비혼(聯臂婚)'이라 한다. 중매인이 혼입한 여성일 경우에 친정의 친가는 물론 외가나 고모 종고모의 집안에서부터 시댁의 친가나 외가 고모 종고모의 집안에까지 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관계가 폭넓게 개방되어 있지 못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갈래의 연줄을 따라 혼처를 물색함으로써 통혼의 범위를 그만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줄혼인은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중매인의 가까운 친족의 범위에서 이러한 연줄혼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가 사이에는 혼인관계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돈관계를 맺은 인척이 다른 혼인으로 다시 사돈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곁사돈'이라 부른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는 조선시대 하층민들 사이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누이바꿈혼'(秋葉 隆 1930)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딸을 교환함으로써 친사돈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다시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친혼을 기피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비록 혈연적인 근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이바꿈혼과 같이 친사돈이 다시 직접 사돈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¹⁰⁾ 사돈의 형제나 사촌 사이 – 이들 사이를 흔히 '곁사돈'¹¹⁾이라 한다 – 또는 범위를

10) 이광규가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5건 밖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 한다(이광규 1975: 77).

11)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다시 또 사돈이 된 관계를 말하는 '곁사돈'과 친사돈과 같은 항렬인 방계의 사돈을 의미하는 '곁사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사돈의 형제를 '곁사돈'이라 한다는 김택규의 지적(김택규 1979: 132)은 '곁사돈'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좀 더 넓혀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한 당내집단 간의 혼인 관계의 중복까지도 겹사돈혼인의 범주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한다.

제주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부찌사돈’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혜숙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겹사돈이라는 용어보다는 ‘부찌사돈’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 번 이상의 혼인 의해서 사돈관계가 중복되었을 때를 일컫는다”(김혜숙 1993: 175)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볼 때 직접 친누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데 A의 친누이가 B에게 시집을 가고, B의 육촌누이가 A에게 시집을 오는 경우도 부찌사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혜숙의 ‘부찌사돈’의 개념은 당내집단 간의 혼인관계의 중복까지 포함하는 필자의 ‘겹사돈’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越三姓한 육촌오누이 사이 - 구체적인 관계는 불명확하지만 - 의 혼인이나 외가로 육촌오누이 사이에서 사돈을 맺은 경우, 고종사촌 자매가 시댁에서 재종시숙모-질부관계(7촌)를 형성한 경우까지 부찌사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김혜숙 1993: 176-179). 부찌사돈의 개념을 이렇게 확대한다면 필자가 사용하는 겹사돈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며 오히려 겹사돈보다 보다 범위가 넓은 연줄혼인의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줄혼인과 겹사돈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겹사돈혼인을 당내집단 간의 혼인의 중첩으로 보고, 연줄혼인은 연비친척의 중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다 넓은 범위의 혼인관계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연줄혼인의 개념 속에는 겹사돈혼인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찌사돈이라는 용어는 겹사돈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겹사돈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연줄혼인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부찌사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이 자리

에서는 부찌사돈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2. 덕수리의 겹사돈혼인

증매혼의 한 형태로서 연줄혼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에서는 겹사돈혼인도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김택규는 1964년에 행해진 경북 안동군의 하회마을 조사보고서에서 연줄혼인이라는 이름으로 6사례의 겹사돈혼인을 소개하고 있다(김택규 1979: 135). 이들의 신분적 배경이 이 마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양반계층인지 아니면 지위가 낮은 비동족 성원들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친정의 근친자를 시댁 근친자의 배우자로 맞이하여 양가간에 겹사돈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체적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친정 조카가 시댁의 조카사위가 된 예
- ② 친정의 사촌여동생이 동서가 된 예
- ③ 친정의 종숙질관계(5촌)가 동서가 된 예
- ④ 친정의 6촌자매가 시가에서 동서, 숙질사이, 종숙질 사이가 된 예

김택규는 이들의 혼인을 연줄혼인이라 불렀지만 양가 8촌 이내의 당내집단 범위 안에서 혼인이 누적되어 사돈관계가 중첩되는 겹사돈혼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마을 안에서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줄혼인이나 겹사돈혼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크리라 짐작된다. 김택규의 하회마을 보고에서도 필자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겹사돈혼인의 사례들 속에는 마을 안에서 혼인한 비동족 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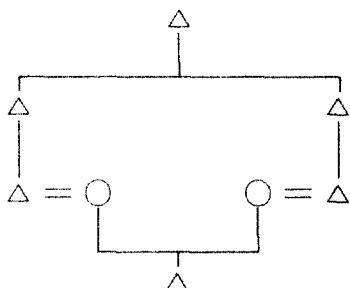
제주도의 겹사돈혼인은 족보분석과 면접조사를 통해서 고내리와 청수리의 사례를 소개한 김혜숙의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찌사

돈이란 용어를 사용한 김혜숙의 보고에는 같은 마을 같은 집안에서 혼입해 들어왔다고만 표현하여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몇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6사례나 된다. 그 중에서 필자가 말하는 겹사돈혼인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월삼성을 거친 오누이 사이의 혼인이나 고종여 동생이 재종질부가 된 예는 제외하고 겹사돈관계를 볼 수 있는 사례를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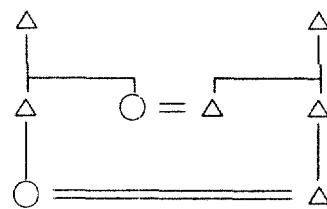
- ① 친정 조카가 시가의 조카사위가 된 예
- ② 친정 종질녀(5촌)가 동서가 된 예
- ③ 친정 재종매(6촌여동생)가 시가의 종질부(5촌)가 된 예
- ④ 친정 재종질녀(7촌)가 시가의 재종질부가 된 예

이들은 모두 양가의 당내 범위 안에서 사돈관계가 중첩된 겹사돈 혼인의 사례에 해당된다. 김혜숙이 사용한 부찌사돈의 개념을 연줄 혼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월삼성을 거친 6촌오누이 사이의 결혼이나 외가로 6촌 사이에서 사돈을 맺은 사례, 고종사촌이 7촌숙질이 된 경우 등도 부찌사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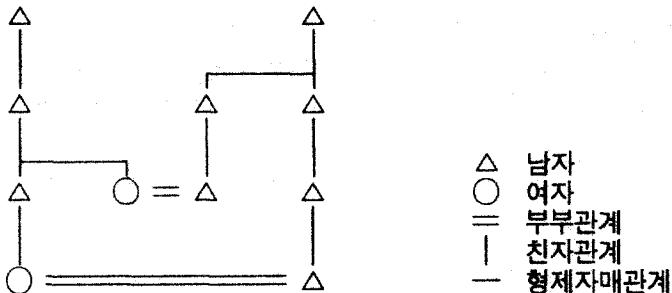
필자가 조사한 1897년의 덕수리 호적중초에서도 3건의 전형적인 겹사돈혼인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우선 이들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1>은 자매가 혼인 후 사촌동서가 된 사례이다. 남자 쪽에서 보면 종형제가 처가에서 친동서가 된 것이다. 이들의 혼인은 초혼은 아니다. 자매의 혼인경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랑이 된 종형제는 재혼자들이다. 사촌형이 배우자를 잃고 - 이혼인지 사별인지 확인·불가능 - 언니와 재혼한 이후 배우자를 잃은 사촌동생이 다시 동생과 재혼하였다. 여자의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돈의 동생 즉 결사돈과 다시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다. 누이바꿈혼이나 자매가 형제에게 시집가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극히 희귀한 사례라고 한다면 비록 초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사돈과 다시 사돈관계를 맺은 <사례 1>은 가장 전형적인 결사돈혼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례 2>는 친정 질녀를 시가의 질부로 맞이한 사례이다. 이들은 1897년 현재 모두 사망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추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이다. 친사돈이 다시 손자와 손녀를 혼인시켜 사돈관계를 연장시킨 전형적인 결사돈혼인에 해당된다.

<사례 3>은 친정질녀를 시가의 종질부로 맞아들인 사례이다. 양 가의 제일 윗 세대에서 보면 손자와 손녀를 혼인시키고 다시 종손자와 증손녀를 혼인시킨 경우이지만 아랫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손녀와 결사돈의 손자를 혼인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사례는 혼인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눈에 발견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추적이 한 마을의 호적증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례들도 마을 안에서 겹사돈혼인을 한 사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밀하게 추적한다면 이 외에도 마을 안에서 겹사돈혼인을 한 예는 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추적의 범위를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시키고 혼출여성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한 마을의 호적증초를 통해서는 혼출여성의 혼인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혼입여성에 대해서도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1897년의 호적증초에는 부녀자의 친정부모에 대한 자료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례는 혼입한 여성이 매개가 되어 친정의 가까운 혈족을 남편의 가까운 혈족과 연결시키는 넓은 의미의 연줄혼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겹사돈혼인이 제주도에서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VII.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1897년에 작성된 덕수리의 호적증초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료로 사용한 호적증초의 기재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연구내용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약 1세기 전 제주도의 혼인양상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오늘날 제주도 가족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제주도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초혼은 대체로 20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8세에서 22세 사이에 과반수의 여성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적증초가 3년마다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7세에서 21세 사이에서 많은 여성들이 혼인하여 여성들에 한해서는 조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부부의 연령차를 살펴보면 처연상형이 적어도 $\frac{1}{3}$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 사대부가에서 처연상형이 많고 평민들은 남편연상형이 많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명문 동족집단이나 양반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제주도의 농촌마을에서 처연상형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제주도 특유의 혼인양상으로 이해된다.
 3. 19세기 말에도 제주도에는 축첩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정치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 틀림이 없지만 혼인제도의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제주도 혼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촌락내혼도 분석 대상자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혹은 3대 이상 촌락내혼을 계속하거나 여러 자녀를 마을 안에서 혼인시키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에도 촌락내혼은 자연스러운 혼인양식으로 이 마을에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또한 제주도에서는 촌락내혼 뿐만 아니라 양가 당내집단이 혼인관계를 중첩시키는 겹사돈혼인도 드물지 않게 행하여 혼인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회사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호적증초가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직접적인 연구결과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특히 호적증초에 기록되어 있는 남성의 연령기록이 광범위하게 의도적으로 정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방면의 연구에 깊이 유의해야 할 점

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고창석

1993 “해제”, 「濟州 大靜縣 德修里 戶籍中草(I~IV)」, 제주대학
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상현

1601 「南槎錄」(제주도교육위원회 편, 「耽羅文獻集」, 1976. 所
收)

김영돈

1973 “通過儀禮”,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報告書」, 濟
州道.

김택규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서울 : 一潮閣.

김혜숙

1993 「濟州島 家庭의 婚姻研究」, 서울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
院 博士學位論文.

이창기

1995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구성 -德修里 戶籍中草를 중심
으로-”, 「가족과 법제의 사회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 46집) : 71-105, 한국사회사학회.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2 “安德面 德修里 調查報告書”, 「學術調查報告書」7 :
15-146.

제주도교육위원회(편)

1976 「耽羅文獻集」, 제주 : 제주도교육위원회

최재석

1975 「文化人類學」7,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 「人文研究」23, 서울 :
高麗大學校.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 一志社.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서울 : 一志社.

津波高志

1992 “제주도의 통혼권”, 『제주도언어민속논총』(현용준박사회
갑기념논총), 제주 : 제주문화.

秋葉 隆

1930 “朝鮮の婚姻形態”, 『京城大學 哲學論集』2 : 49-97.

泉 靖一

1966 『濟州島』, 東京 : 東京大出版會.

佐藤信行

1973 “濟州島の家族”, 『韓國の家族と祭儀』(中根千枝 編), 東京
: 東京大出版會.

Marriages in a Village of Rural Cheju in the Late 19th Century

Lee, Chang-Kee

Dept. of Sociology,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custom of rural Cheju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the triennial household register data(*Ho-jok-jung-cho*) of Deoksu-ri in Cheju Island, 1897.

It i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familial institutions in today's Cheju can be traced back to those of the 19th century.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ge at first marriage of women ranged from 15 to the late 20s, especially clustered round the age of 17-21. It seems that early marriage was not widely practiced in Ch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2. Wife-seniority was found in one third and over of married couples in this village. Although the practice of wife-seniority was common among the *yang-ban* class in traditional Korea, it was known to be rare in rural Cheju in the 19th century due to the absence of *yang-ban* culture.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wife-seniority was widely practiced in this area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This finding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The widespread practice of wife-seniority in rural Cheju during the time, it can be inferred that, resulted from the importance of female labor force, which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socio-economic aspects of Cheju Island.

3. Concubinage was also common in Cheju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Many husbands were found to keep concubines with or without their legal wives. Although the concubines should hold lower social statuses than the legal wives, their social statuses seemed to be quite stable since the concubinage was widely recognized as a

customary arrangement within the marital institution in Cheju Island during the time.

4. Village endogamy,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marriage customs in Cheju Island, was also found to be widespread in this village, accounting for 40 percent of all the marriages under investigation. In many cases, village endogamy was practiced for two or three generations.

5. It is also found that *kyopsadon-marriages*, marriages between in-laws, were not uncommon in rural Cheju. This seems to be a way of reinforcing social cohesion among the kin groups.

6. Finally,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data on male ages in this household register were extensively distorted on purpose. This falsification in raw data should be taken into a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future study and a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matter needs to be followed. @